

대통령령 제 호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민감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조(민감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급식소 이용자별 영양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